

# 녹용명칭·회분함량 재개정 여론

주 재 승/한국의약신문 취재부장

회분을 25% 이하만을 녹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녹용정책이 한의학이 활성화돼 있는 「중국」이나 「일본」등 주변국들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약전에 녹용과 관련, 회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녹용을 「미골화」의 어린 뿌로 정의하고 그 길이를 17~100cm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앙대사전은 녹용을 미골화 어린 뿌로 정의하고 상품, 중품, 하품의 개념으로 구분, 각각의 회분함량을 26.65%, 37.79%, 40.11%로 수록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약국방(약전)이나 생약규격집엔 녹용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생성 내규에는 녹용을 각질화되지 않은 어린 뿌로 규정하고 회분함량을 38%로 정하고 있다. (92년 일본 생약연합회가 작성한 생약규격안)

미골화의 어린 뿌로 정의된 녹용은 길이 20~80cm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볼때 일본의 경우 녹용을 각질화되지 않은 어린 뿌로 정의하면서 동시에 이에 따른 회분함량을 38%로 규정한 것은 미골화의 개념을 회분함량 38%까지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약전에서 녹용을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 뿌로 정의하면서 녹용의 길이를 17~100cm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앙대사전엔 녹용 정의를 미골화된 어린 뿌로 하면서 회분함량을 26.65~40.11%로 명시함으로써 미골화의 개념을 40.11%

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녹용 정책에서 미골화된 어린 뿌의 개념을 지금과 같이 회분 함량 25% 이하로 계속 제한할 경우 국내외에서 명분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녹용 관련규정은 회분을 25%이하가 「녹용」이고, 25% 이상 35% 이하는 「녹용각」, 완전 각질화된 것은 「녹각」이다.

35% 이상이면서 각질화되지 않은 뿌은 사용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의 녹용 정책은 이처럼 주변국 등과의 교류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으며 내부적으론 한의계를 비롯한 관련업계로부터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사정으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녹용 관련 규정의 재개정을 조심스럽게 협의중이며 개정 범위는 회분함량과 녹용류 명칭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녹용 관련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정부가 지금과 같이 명칭의 2원화와 회분을 25% 이하를 고수할 경우 국내의 반발과 외국과의 마찰 등을 불러올 전망이다.

또한 「미골화」에 대한 개념도 외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의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는 만약 정부가 「미골화」란 용어에 치우쳐 회분함량을 25% 이하를 고집할 경우 △학술적 근거 미약 △녹용 가격 폭등 및 수급 차질 △관련 단체 민원 야기 △외국과의 학술교류 차질 및 통상 마찰 우려 △지표 물질 규명 무의미 △녹용 밀수 증가 △녹용

관련 제약산업 위축 △소비자 부담 증가 및 분쟁 우려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녹용의 규격기준중 「미골화」 개념과 25%이하의 회분함량을 일치시키려면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학술적 근거 등)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골질화되지 않은 부분의 회분함량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최소 17.2%에서 최고 27.5%가 나온 것에 비춰봐도 「미골화」를 25%에 맞추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

또한 「미골화」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

이는 녹각에 대한 기준이 따로 설정돼 있어, 녹용을 미골화된 어린 뿔이라고 정의할 때 그 개념이 어디까지의 「골화」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해석에 논란을 부를수 있다.

판정기준 및 방법의 명확한 내용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가 녹용류에 대한 규정중 「미골화」 또는 「골화」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뿔의 조직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그 방법이 현미경에 의한 정밀 검사인지, 육안에 의한 관능검사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검사자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 □ 녹용 가격폭등 및 수급차질

녹용을 회분을 25%이하로 계속 묶어두면

유통 녹용류의 12.2%만 녹용으로 적합하고 나머지 87.8%는 녹용 부적합품으로 판정돼 유통이 불가능해 진다.

앞서 안전본부가 전지상태에서 유통되던 녹용에 대한 회분율을 검사한 결과 17개 전지녹용에서 채취한 98개 샘플 가운데 13개만이 25%이하로 판정된 바 있다. 이같은 근거로 산출해 보면 전체 녹용물량의 12.2%만 녹용으로 유통될 경우 지금보다 8배이상의 수요가 형성되고, 가격상승 등에 따른 수요위축을 감안해도 수요가 최소 4~5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유통되던 녹용전지의 총가격이 12.2%에 전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회분을 25%이하의 녹용 가격은 최소한 400~500% 가량 폭등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 □ 한의계 등 관련업계 반발

정부가 지금까지 녹용을 25%이하의 회분함량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약사감시 등을 통해 단속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의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민원도 빈발하게 나타날 소지가 높다.

특히 「녹용각」을 어떠한 질환이나 증상에 사용해야 하는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칭을 고수하면서 업계에 사용을 강요한다면 결국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약화 및 의료사고)는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중·일 녹용규격기준 비교>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공 정 서	한약규격집	중국약전	후생성 내규	
기 원	매화록, 마록, 동속근연동물의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 뿔	매화록, 마록의 골화되지 않은 어린 뿔	매화록, 마록, 대록의 각질화 안된 어린 뿔	
성 상	길이	화녹용: 17~20cm 마녹용: 20~40cm	화녹용: 17~33cm 마녹용: 25~100cm	20~80cm
	절단면	위: 얇은 황색, 중간: 자적색 아래: 회백색 (세로 절단면)	절단면 하단: 회흑색	회갈색, 암적갈색
	분 지		1~3분지	1~4분지
회분함량	25% 이하	정하지 않음	38% 이하	

## □ 대외 통상마찰 등 우려

우리나라가 녹용의 회분 함량기준을 25% 이하로 계속 묶어둘 경우 회분함량 38%의 일본, 40.11%이하의 중국(중약대사전) 등의 기준과 격차로 인해 수·출입 및 학술적 교류에서 적지않은 혼란이 우려된다.

또 통상분야에선 한국, 대만, 일본, 홍콩 등의 국가를 상대로 녹용을 수출하는 뉴질랜드가 녹용회분 함량을 25%이하로 한 우리나라에 대해 강력한 개선을 이미 요구한 상태다. 특히 뉴질랜드는 우리나라가 녹용관련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자국에 피해가 크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이어 녹용에 대한 객관적인 국제기준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녹용정책이 회분율 25%를 기준으로 계속된다면 녹용의 지표물질(강그리오사이

드) 연구결과를 반영할 때 녹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표물질의 순도 및 함량기준이 25% 이하의 회분함량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의 하나.

이밖에도 정부의 녹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사용가능성이 큰 회분율 25%이상의 녹용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녹용밀수의 불법행위 역시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녹용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생산감소는 유통의 위축을 가져오며 이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관련업체는 일본수준인 38% 선에서 녹용의 회분함량 기준을 다시 정하고, 업계가 이를 상·중·하대 개념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문전배달 신속 서비스

# ♣ 크로바 사슴연구소 ♣

- **효율적인 사육상담**  
(동우회·작목반·친목회·지회 특강-계절별 사슴관리, 약품취급 요령)
- **우수 기자재 공급**  
(녹용 절단기, 마취기구, 철망, 녹용케이스, 산소통)
- **약품공급**  
(동물약품 출장소장 및 현장상담 9년, 대리점 택배 씨스팀)
- **유통의 신용화 노력**  
(농장 컨설팅, 분양, 매매)
- **전문인력 교류 및 배치**  
(운반·절각·엑기스 생산 대행, 사육장 설치 등)

## 소 장 정 이 성

사슴농장 : 전남 곡성군 오산면 단사리 263-1

TEL : (0688)363-6670~1

건 강 원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80-15

TEL : (062)263-5101

휴대폰 : 011-627-6671

온 라 인 : 우체국 502641-0006378-12(정이성)